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

발의연월일: 2024. 6. 4.

발 의 자:이헌승·김도읍·백종헌

윤상현 • 박덕흠 • 안철수

조경태 · 김성원 · 김정재

박성민 · 서일준 · 이양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,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·협력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은 자연 감소보다는 사회적 이동에 따른 것으로, 지역인재 및 인력유출에 따라 지역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된다는데 문제가 있음.

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,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련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장에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)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구 감소지역 내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책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 제할 수 있다.

제28조의3(부담금의 감면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,「농지법」,「초지법」,「산지관리법」,「자연환경보전법」,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,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및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・농지보전부담금・대체초지조성비・대체산림자원조성비・생태계보전부담금・교통유발부담금・광역교통시설 부담금・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8조의2(예비타당성조사 실시
	에 관한 특례) 기획재정부장관
	은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산업
	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
	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	에는 해당 국책사업의 신속하
	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국
	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도
	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
	제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28조의3(부담금의 감면 등) 국
	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
	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
	고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
	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
	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개발이
	의 환수에 관한 법률」, 「농지
	법」, 「초지법」, 「산지관리
	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
	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, 「대
	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
	특별법」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
	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

법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・농지보전부담금・대체초지조성비・대체산림자원조성비・생태계보전부담금・교통유발부담금・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.